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6, 별표 1의3,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별표 3, 별지 제17호서식)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토석의 반입을 토석채취변경신고 등의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법 제3조의5”를 “법 제3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3.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관련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8.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9.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변경신고

10.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전체에 대해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되, 사면안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별표 1의3 비고 제4호가목1) 중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를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4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이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과 동일하게 선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개소 이하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의3 비고 제4호나목1) 중 “2만제곱미터”를 “2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 입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

별지 제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토석채취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반입량	
			m³	m³	m³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재해위험 조사표준지		연번						유역면적(ha)									
일반 현황		조사 및 검토자		소속		자격 증명				직							
						자격 번호				성명		(인)					
		조사일자								연 락 처							
		위치		행정구역													
GPS																	
보호 대상		보호 시설		Yes	☐	보호 시설 개소수		인가		Yes	☐	인가수					
				No	☐					No	☐						
		계류상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하부 주요보호시설(상세)															
		계류상부 인가(상세)															
계류하부 인가(상세)																	
기초조사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		점수합계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점수합계				실태조사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실태조사 판정표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현장조사 점수				등급		현장조사 점수				등급					
		시뮬레이션 점수						안정해석 점수									
검토 의견	위험 지역 선정 사유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특이 사항																
		종합 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의견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 유무				Yes		☐									
						No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종류				계류보전	☐	사방댐	☐	산지사방	☐						
		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 선정사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 ⑦ (생략) ⑧ 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고시된 내용을 <u>법 제3조의5</u> 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⑨·⑩ (생략) <u><신 설></u>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법 제3조의5제1항</u> ----- ----- ----- -----. ⑨·⑩ (현행과 같음) <u>제2조의2(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u> ① <u>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1.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u> <u>2.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u>

3.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변경신고

4.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변경허가, 산지
전용신고·변경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징수 관련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의 승인

7.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

8.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
의 지정

9.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 변경신고

10. 그 밖에 산지관리 업무를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산
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
장등”이라 한다)은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

<신 설>

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허가 등에 관한 자료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6(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는 별표 1의3 제5호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의 산사태 위험성 평가 순서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의 수평투영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④ ~ ⑨ (생략)	<u>고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면적 전체에 대해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되, 사면안정해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u>따른 토석의 반입</u> ④ ~ ⑨ (현행과 같음)
--	--